

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7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11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 이유

- 견고 싶은 가로수 숲길 조성을 위한 가로수 훼손 부담금제 도입을 위해, 시행규칙의 모호성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행정처리가 용이하게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로수 훼손자·원인자 부담금 등의 용어 재정비(안 제19조, 제20조)
- 원인자가 직접 이식시 예치금의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히 함(안 제20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1조
- 도로법 제91조
- 도로법 시행령 제91조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0조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
-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80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사전예고 결과 : 붙임

- 부패영향평가(감사관) : 예치금 반환 방법, 절차 등 내용을 명시(보완)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
- 자체 검증 : 별표 2의 조문변경 및 오탈자 수정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(전문)
- 방침결정문

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제목 “(훼손자부담금)” 을 “(훼손자부담금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시장은 가로수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금으로 2년 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고, 훼손자는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치금의 반환을 신청하며, 시장은 「안산시 재무회계규칙」 제80조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

제20조 제목 “(원인자부담금)” 을 “(원인자부담금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자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금으로 2년간 예치하게 할 수 있고, 원인자는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치금의 반환을 신청하며, 시장은 「안산시 재무회계규칙」 제80조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녹지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녹지과장 이 정 숙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시숲조성팀장 최 락 준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공 성 경 (행정 2346)

[별표 2]

훼손자·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(제19조, 제20조 관련)

<p>훼손자 부담금 등</p>	<p>1. 별채, 수간절단 등으로 조정수 가치가 없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※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 : 예치금 = 도급공사비</p> <p>2.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: 부담금 = 수목비의 20% +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※ 강도의 가지치기 : 수관의 1/3 이상 ※ 작업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</p> <p>3.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: 부담금 = 수목비의 10% + 작업비</p>
<p>원인자 부담금 등</p>	<p>1.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.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: 예치금 = 도급공사비 나.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+ 이식비 ※ 이식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</p> <p>2. 제거하는 경우 가.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나.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+ 제거비 ※ 제거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</p>
<p>※ 비 고</p> <p>도 급 공 사 비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에 의한 원가계산(수목등 재료비포함)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</p> <p>수 목 비 : 가격정보지(조달청) 가격적용,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</p> <p>예치금납부방법 :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일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</p> <p>예치금예치기간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하자책임담보 기간동안 예치</p> <p>예치금환불 등 :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목에 대한 조정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제외수입 조치</p>	

가로수 예치금 반환신청서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☎	
가로수표시	가로수위치			본 수
반환 신청액	일금			
반환계좌				
신청사유	가로수 이식에 따른 하자기간(2년) 만료			

위와 같이 가로수 예치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○○○○장 귀하

동 의 서

하자이행기간(2년)동안 예금주 '○○○○'으로 관리하던 정기예금 통장을 신청인 명의로 변경 후, 예치금을 반환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성명(법인명): (인)

개인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

1.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목적
 - 가로수 예치금 반환을 위한 본인 확인 기초자료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- 필수사항 : 신청인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10년
4.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가로수 예치금이 반환됨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동의하지 않음

※ 첨부서류 :

1. 통장사본 1부.
2. 식재 현황 사진 1부.[이식수량 모두 확인 가능하게]
3. 예치금 납부 영수증 원본(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-신청인도장날인)
4. 그 밖의 서류
 -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:
 - [본인] - 개인 신분증 사본.
 - [본인이 아닐 경우] - 신청인 신분증 사본, 인감증명서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.
 -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: 법인 등기부 등본, 법인인감, 사업자 등록증 사본, 위임장,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사본.

현행	개정안
<p>[별표 2] 훼손자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(제19조, 제20조 관련)</p>	<p>[별표 2] 훼손자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(제19조, 제20조 관련)</p>
<p>훼손자부담금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벌채,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2.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: 부담금 = 수목비의 20% +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※ 강도의 가지치기 : 수관의 3/1 이상 ※ 작업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 3.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: 부담금 = 수목비의 10% + 작업비 	<p>훼손자부담금 등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벌채,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※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는 경우 : 예치금 = 도급공사비 2.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: 부담금 = 수목비의 20% + 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※ 강도의 가지치기 : 수관의 <u>1/3</u> 이상 ※ 작업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 3.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: 부담금 = 수목비의 10% + 작업비
<p>원인자부담금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.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나.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+ 이식비 ※ 이식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 2. 제거하는 경우 가.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나.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+ 제거비 ※ 제거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 	<p>원인자부담금 등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.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: 예치금 = 도급공사비 나.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+ 이식비 ※ 이식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 2. 제거하는 경우 가.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나.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: 부담금 = 도급공사비 + 제거비 ※ 제거비 : 상용인부 활용시 인부임에 준함
<p>※ 비고</p> <p>도급공사비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원가계산(수목등 재료비포함)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</p> <p>수목비 : 가격정보지(조달청) 가격적용,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</p> <p>예치금납부방법 :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</p> <p>예치금예치기간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 기간동안 예치</p> <p>예치금환불 등 :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제외수입 조치</p>	<p>※ 비고</p> <p>도급공사비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에 의한 원가계산(수목등 재료비포함)적용하여 설계된 공사비</p> <p>수목비 : 가격정보지(조달청) 가격적용,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</p> <p>예치금납부방법 :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일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</p> <p>예치금예치기간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하자책임담보 기간동안 예치</p> <p>예치금환불 등 :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제외수입 조치</p>

현	행	개	정	안
		[별지 제7호서식]		
		가로수 예치금 반환신청서	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☎	
가로수표시	가로수위치		본 수	
반환 신청액	일금			
반환계좌				
신 청 사유	가로수 이식에 따른 하자기간(2년) 만료			
위와 같이 가로수 예치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) ○○○○장 귀하				
동 의 서 하자이행기간(2년)동안 예금주 '○○○○'으로 관리하던 정기예금 통장을 신청인 명의로 변경 후, 예치금을 반환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성명(법인명): (인)				
개인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 1.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목적 - 가로수 예치금 반환을 위한 본인 확인 기초자료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- 필수사항 : 신청인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10년 4.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가로수 예치금이 반환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				
※ 첨부서류 : 1. 통장사본 1부. 2. 식재 현황 사진 1부.[이식수량 모두 확인 가능하게] 3. 예치금 납부 영수증 원본(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신청인도장날인) 4. 그 밖의 서류 ■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: [본인] - 개인 신분증 사본. [본인이 아닐 경우] - 신청인 신분증 사본, 인감 증명서,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. ■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: 법인 등기부 등본, 법인인감, 사업자 등록증 사본, 위임장,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사본.				

< 신 설 >